###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재봉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453 발의연월일: 2024. 9. 30.

발 의 자: 송재봉·황정아·임광현

이재관 · 김동아 · 김우영

임호선 · 복기왕 · 장종태

박범계 • 추미애 • 이광희

황명선 • 이강일 • 이연희

백승아 · 장철민 · 강준현

이정문 의원(19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으나, 해당 회계는 지역자율계정, 지역지원계정,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만을 두고 있음.

그러나 다극체제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메가시티 구성 협력을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관련경비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 자립도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작음.

이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광역 협력계정을 신설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76조,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및 제81조의2).

#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6조 중 "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"을 "제주특별자치도계정,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광역협력계정(이하 "광역협력계정"이라 한다)"으로 한다.

제78조제1항제7호 중 "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"를 "제주특별자치도계정,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광역협력계정으로부터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"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"를 "제주특별자치도계정,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"를 "제주특별자치도계정,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"로 한다.

제79조제1항제6호 중 "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"를 "제주특별자치도계정,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광역협력계정으로부터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5호 중 "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"를 "제주특별자치도계정,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"를 "제주특별자치도계정,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"로 한다.

제80조제1항제2호 중 "지역지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

의"를 "지역지원계정,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광역협력계정으로부터 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"지역지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"를 "지역지원계정,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광역협력계정으로의"로 한다.

제81조제1항제2호 중 "지역지원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부터의"를 "지역지원계정,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광역협력계정으로부터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"지역지원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의"를 "지역지원계정,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광역협력계정으로의"를 하다.

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1조의2(광역협력계정의 세입과 세출) ① 회계의 광역협력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

- 1.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
- 2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지역지원계정,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 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
- 3.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
- 4.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
- 5.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
- ② 회계의 광역협력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·보조 또는 융자 등

- 가. 제78조제2항제1호(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)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
- 나.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, 제9호,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·보조·융자 및 지원 등
- 다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
- 2.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
- 3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지역지원계정,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 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
- 4.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

#### 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6조(계정의 구분) 회계는 지역	제76조(계정의 구분)
자율계정, 지역지원계정, <u>제주</u>	
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	제주특별자치도
<u>치시계정</u> 으로 구분한다.	계정,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
	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3항에
	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지원
	하기 위한 광역협력계정(이하
	"광역협력계정"이라 한다)
제78조(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	제78조(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
세출) ① 회계의 지역자율계정	세출) ①
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회계의 지역지원계정, <u>제주</u>	7제주
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	특별자치도계정, 세종특별자
<u> 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</u> 전입	치시계정 및 광역협력계정으
그	로부터의
8. ~ 12. (생 략)	8. ~ 12. (현행과 같음)
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	②
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회계의 지역지원계정, <u>제주</u>	6 <u>제주</u>
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	특별자치도계정, 세종특별자

#### 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

- 7. (생략)
- ③ (생략)
- 세출) ①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~ 5. (생략)
  - 6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제주 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 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
  - 7. ~ 11. (생 략)
  -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 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~ 14. (생 략)
  - 15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제주 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 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
  - 16. (생략)
  - ③ ④ (생 략)
- 제80조(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 | 제80조(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 입과 세출) ① 회계의 제주특 별자치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(생략)

치시계정	및	광역협력계정으
로의		

- 7. (현행과 같음)
- ③ (현행과 같음)

제79조(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제79조(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) ① -----

- 1. ~ 5. (현행과 같음)
- 특별자치도계정, 세종특별자 치시계정 및 광역협력계정으 로부터의-----
  - 7. ~ 11. (현행과 같음)

  - 1. ~ 14. (현행과 같음)
  - 15. -----제주 특별자치도계정, 세종특별자 치시계정 및 광역협력계정으 로의-----
    - 16. (현행과 같음)
    -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입과 세출) ① -----

1. (현행과 같음)

- 2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지역 2. 지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
- 3. ~ 5. (생략)
- ②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~ 3. (생략)
- 4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<u>지역</u> 지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 계정으로의 전출금
- 5. (생략)
- ③ (생략)
- 제81조(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 기입과 세출) ①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은 다음각 호와 같다.
  - 1. (생략)
  - 2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<u>지역</u><u>지원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</u><u>계정으로부터의</u> 전입금
  - 3. ~ 5. (생략)
  - ②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2. (생략)

<i>Z.</i>
지역지원계정, 세종특
별자치시계정 및 광역협력계
정으로부터의
3. ~ 5. (현행과 같음)
2
1. ~ 3. (현행과 같음)
4
지역지원계정, 세종특
별자치시계정 및 광역협력계
<u>정으로의</u>
5. (현행과 같음)
③ (현행과 같음)
제81조(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
입과 세출) ①
1. (현행과 같음)
2
<u>지역지원계정 , 제주</u>
특별자치도계정 및 광역협력
계정으로부터의
3. ~ 5. (현행과 같음)
2
1.・2. (현행과 같음)

- 3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<u>지역</u><u>지원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</u><u>계정으로의</u> 전출금
- 4. (생략)
- ③ (생략)
- <신 설>

- 3. -----지역지원계정, 제주특 <u>별자치도계정 및 광역협력계</u> 정으로의-----
- 4. (현행과 같음)
- ③ (현행과 같음)
- 제81조의2(광역협력계정의 세입 과 세출) ① 회계의 광역협력 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
  - 1.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
  - 2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지역 지원계정, 제주특별자치도계 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 로부터의 전입금
  - 3.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 입금
  - 4.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 상 잉여금
  - 5.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
  - ② 회계의 광역협력계정의 세 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3호 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

- 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・보조 또는 융자 등
- 가.
   제78조제2항제1호(같은

   호
   바목은
   제외한다)
   및

   제7호에
   따른
   보조
   및
   지원
- 나.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, 제9호, 제10호 및제16호에 따른 출연·보조· 융자 및 지원 등
- 다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 자치단체의 보조사업
- 2.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
- 3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지역 지원계정, 제주특별자치도계 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 로의 전출금
- 4.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